中国銀行 BANK OF CHINA

준법감시인심의필:bocsl-a2618(2026.5.18)
유효기간(2026.06.01-2027.05.31)

외화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.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: 외화 정기예금
- 상품특징: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외화를 통장식으로 예치하실 수 있으며, 확정금리상품으로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정기예금

2.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• 개인, 개인사업자
상품유형	• 정기예금
거래방법	주계좌 • 신규 : 영업점 • 해지 : 영업점 자계좌 • 신규 : 영업점, 온라인뱅킹 • 해지 : 영업점, 온라인뱅킹
가입금액	• 제한 없음
계약기간	• 1개월, 3개월,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정함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• 계좌에 **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**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• **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**에는 입금 · 출금 ·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
기본이자율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설명서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(2025년10월20일변동)

계약기간	1개월	3개월	6개월	12개월
USD 기본이자율	3.10%	3.10%	3.00%	3.00%
CNY 기본이자율	0.60%	0.60%	0.80%	0.80%

최종이자율	• 신규(또는 재예치)일 당시 영업점 및 중국은행 비대면 채널(모바일 위챗 공식계정)에 고시한 예치기간, 예치금액, 거래채널별 우대금리 적용 ※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만기후이자율	• 자동 재예치 하지 않은 경우 요구불예금의 당행 고시이율 적용

<table>
<tr><td>만기이자 산출근거</td><td>•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
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× 연이자율 × 예치일수/360일

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

신규액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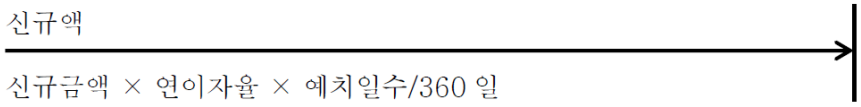
신규금액 × 연이자율 × 예치일수/360 일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이자율</td><td><table><tr><td>예치기간</td><td>중도해지이자율</td></tr><tr><td>1개월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10%</td></tr><tr>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40%</td></tr><tr><td>6개월이상</td><td>약정이율 × 50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이자
산출근거</td><td>•[중도해지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× 중도해지이자율 × 예치일수/360일</td></tr>
<tr><td>예금자보호여부</td><td>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td></tr>
<tr><td>재예치</td><td>가능</td><td>해지방법을 자동 재예치로 신청한 경우
(질권설정, 압류 및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사고신고된 계좌, 자동재예치 당일 잔액증명서 발급계좌의 경우는 자동재예치 제외)</td></tr>
<tr><td>부분인출</td><td>가능</td><td>만기일 이전 매 계약기간(재예치 포함)마다 1회 부분인출 가능
부분인출금액의 이자는 중도해지 이자율로 지급</td></tr>
<tr><td>담보제공</td><td>불가능</td><td>불가능</td></tr>
<tr><td>계약해지방법</td><td colspan="2">• 주계좌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(자계좌는 영업점, 온라인뱅킹에서 해지 가능)
•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</td></tr>
<tr><td>위법계약해지권</td><td colspan="2">• 은행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,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 알리고,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,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(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)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,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자료열람요구권</td><td colspan="2">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</td></tr>
</table>

	은행은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, 이를 고객에게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
3.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**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**
- **예금의 신규, 해지 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.**
- **가입한 예금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로 출금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**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670-5566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해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